

산업안전 Q&A

Q

저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우리현장의 공사금액은 최초 776억원이고, 현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09억원입니다. 협력업체 중 부대입찰로 선정되어 최초 공사금액이 228억원이었고, 현재는 229억원입니다.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는 2명으로 되어 있어 원도급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지체없이 선임하고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에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사금액이 최초 776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909억원으로 변경되었다면, 설계변경된 시점에서 원청시공사소속의 전담안전관리자수를 1명 더 증원시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발주자와 수급인의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경우 공사종료시 미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수급인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공사진행시, 하도급업체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부당 사용하였거나, 또는 안전관리비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미사용(부당사용)된 안전관리비를 회수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8조에서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안전관리비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수 또는 감액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당 현장은 7번국도에서 약3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현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 12월 준공되었고 소각시설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폭설이 내렸습니다.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장까지 순수하게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동을 위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재료/충장비) 및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현장사무실과 현장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는 일반사고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장의 범위를 현장사무실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는 목적물만을 현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제설 및 제빙작업이 귀 현장내 작업장소로 연결된 이동로의 폭설 및 결빙 등으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는 도로보수원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그중 3명은 내근을 하고, 10은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정에 의거 생산직 종사근로자로 간주하고 매월 2시간이상의 정기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 판단으로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적용할 수가 없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가 “공공행정”에 속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귀하가 질의한 같은 법 31조의 근로자 안전교육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단서 조항에 의거 법의 일부만 적용받고 있으나 같은 법 제31조의 조항은 배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